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9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윤준병 · 어기구
정준호 · 서영교 · 서영석
조인철 · 한민수 · 노종면
이용우 · 이해식 · 최혁진
진성준 · 김영환 · 서삼석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,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%를 감면 받고 있음.

그러나, 특수임무공로자 1,673명 중 1,080명(64.6%)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,187명 중 683명(57.5%)이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.

이에,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항 등)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제3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33조 및 제33조의2에”를 “제33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진료) ① ~ ⑤ (생략)	제33조(진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</u>
<u>⑥ · ⑦ (생략)</u>	<u>⑦ · 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</u>
<u>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</u> <u>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</u>	<u><삭제></u>

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
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
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만,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 1. ~ 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